

성 남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시보

선
람

기 관 의 장

제2017호

2025년 9월 4일 (목)

차
례

고
시

◦ 성남시 고시 제2025-275호 생활권 재개발사업 후보지 행위제한 고시..... 2

회
람

발행: 성남시 편집: 공보관

행위제한 고시

우리시 관내 생활권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9. 4.

성 남 시 장

1. 제한지역

연번	구역명	위 치	면적(m ²)	비고
1	수진2	수정구 수진동 3603번지 일원	122,172	
2	태평2·4	수정구 태평동 1180번지 일원	183,849	
3	산성	수정구 산성동 74번지 일원	52,090	
4	단대	수정구 단대동 48-2번지 일원	39,901	
5	상대원1·3	중원구 상대원동 817번지 일원	102,325	
6	태평1	수정구 태평동 5878번지 일원	73,269	
7	은행1·금광2	중원구 은행동 1947번지 일원	117,999	

2. 제한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

3. 제한사유

-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원활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함.

4. 제한 대상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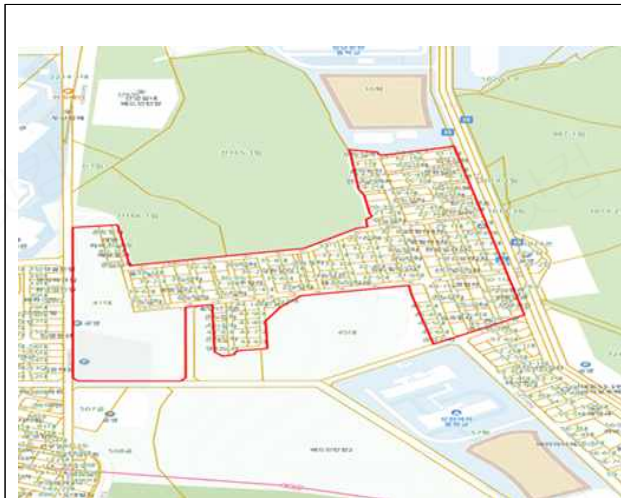
- 건축물의 건축
- 토지의 분할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
5. 기타사항

- 도면 열람 및 기타 사항은 성남시청 재개발과(☎031-729-4873, 4525, 48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관계도면





단대구역



태평1구역



은행1·금광2구역